

공 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-2494호

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주민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6호(2023.10.19.)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,
2. 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,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10. 18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가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4.10.17.~2024.11.21.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강남구보건소 5층) 및 담당자 이메일(dbg kssk72@gangnam.go.kr, ☎ 02-3423-6073), 논현2동주민센터, 논현동현(아) 관리사무소

다. 공람 내용 : 정비구역등의 해제

결정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
해제	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	논현동 150번지 일대	35,534.9㎡

2) 해제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제1항제3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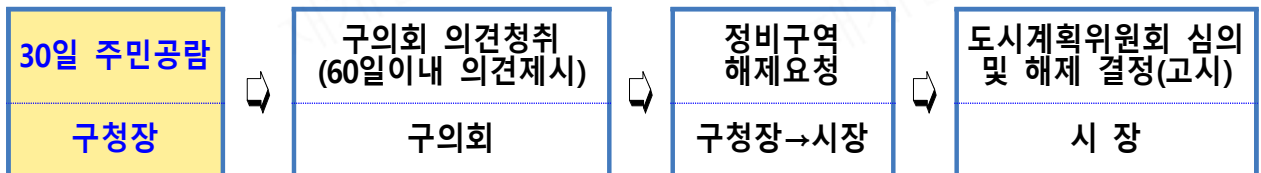
-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(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)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

라. 주요내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.
- 이후 정비계획을 새롭게 입안하는 경우, 안전진단 절차부터 재 실시 하여야 함.
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제24조제4항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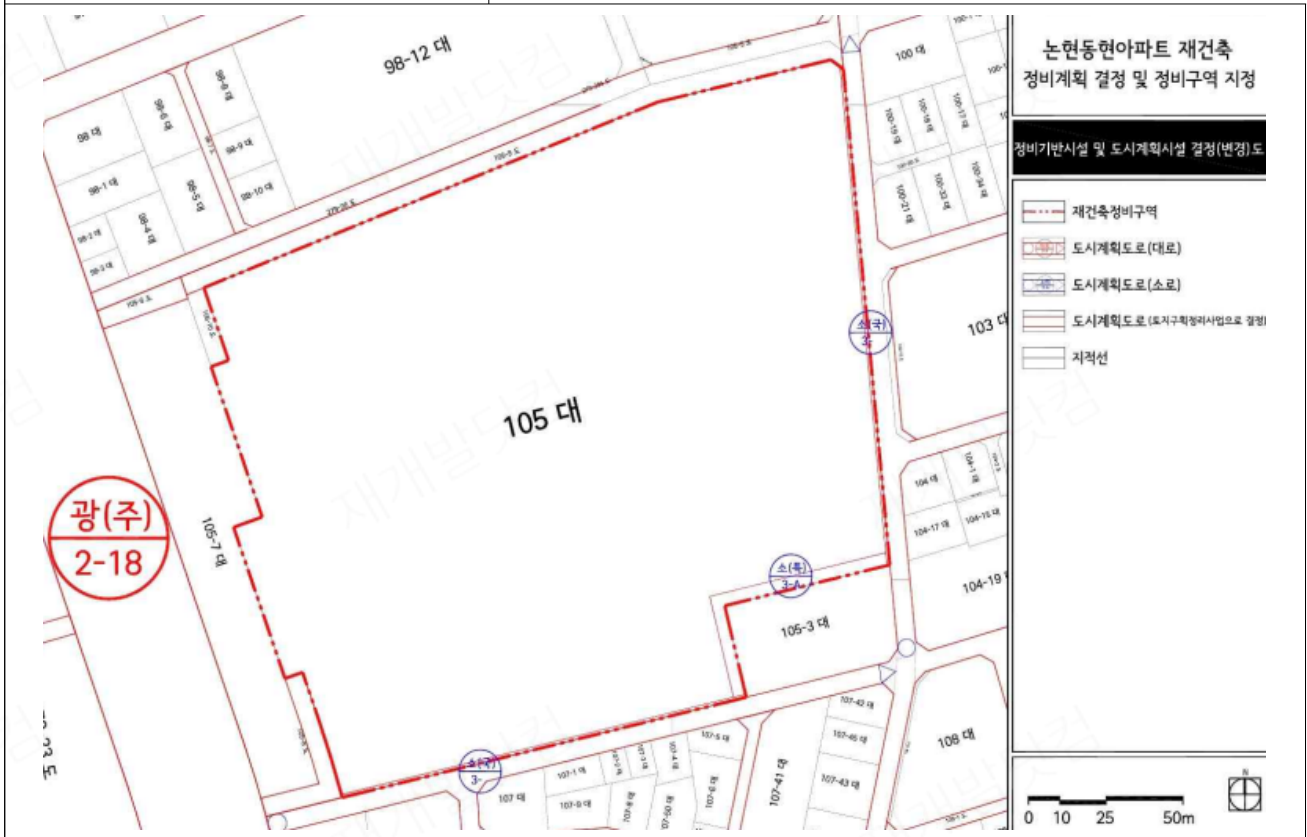
마. 직권해제 절차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제1항에 의거,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음.

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6호(2023.10.19.)



정비계획 결정도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6호(2023.10.19.)

